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체류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명확화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전산을 통한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각한 경영상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분할납부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체납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임의 가입절차 마련(규칙 제2조의 3 및 제2조의4 신설)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마련함

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규칙 제14조의2 신설)

고용보험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다.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규칙 제8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함

라.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규칙 제80조의2 신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3.1.1~6.30)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마련(규칙 제78조 개정)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10
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다른 조문 정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
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
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외국인예술인의 가입신청) ①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4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신청 사실을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알

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4(외국인노무제공자의 가입신청) ①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4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의6제4항에 따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

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영 제104조의12제3항 또는 영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노무제공자가 직접 가입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신청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무제공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을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조의3제1항·제2항·제5항, 제2조의4제1항·제2항·제5항”으로, “사업주”를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0조 중 “제2조의2”를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예술인·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를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로, “별지 제75호의4서식(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말한다)”을 “별지 제75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7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35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의 특례)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 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경우. 다만,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같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보험료의 100분의 30이상을 2023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경우. 다만,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이후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같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를 제82조의3으로 하고,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신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이사화물의 운송명세 등 이주 사실 및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지급신청서”로, “출산전후휴가를”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중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으로,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으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으로 한다.

4. 유산이나 사산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4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급여등”을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급여등”을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급여등의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를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지급제한,”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추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급여등의 금액”을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금액”으로 한다.

제125조의2제1항 중 “예술인이”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15세 미만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주자·원수급인 또는 해당 15세 미만 예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15세 미만 예술인인 단기 예술인인 경우에는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의6제3항 전단 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으로, “반환명령”을 “지급제한, 반환명령”으로 한다.

제125조의7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25조의8제1항 중 “노무제공자”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해당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단기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영 제104조의12제3항 또는 영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25조의12제3항 전단 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으로, “반환명령”을 “지급제한, 반환명령”으로 한다.

제125조의13 중 “법 제77조의10제3항”을 “법 제77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3쪽 중 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의 3쪽 중 1쪽과 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뒤쪽, 별지 제82호서식의 3쪽 중 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6호의 서식, 별지 제106호의2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별지 제10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9호서식까지 중 “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을 “제77조의5제4항·제77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 중 “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을 “제77조의5제4항·제77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세 미만 [] 가 입
[] 외국인 예술인 고용보험 [] 가입탈퇴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
	명칭	(팩스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 아래의 생년월일, 체류자격, 국적은 외국인인 경우에만 작성)	
	영문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체류자격 국 적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노무제공개시일	직종 부호	월평균보수
단기예술인 여부 [] 예 [] 아니오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제7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제2호, 제104조의5제5항·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2항·제5항, 제125조의2제3항·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2. 주민등록표 초본(15세 미만 예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탈퇴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는 15세 미만 및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이 신청서는 15세 미만 및 외국인인 예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등은 이들이 보험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및 외국인인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업주 신청 불가)

작성방법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는 예술인 사업장으로 별도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노무제공개시일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용역(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4.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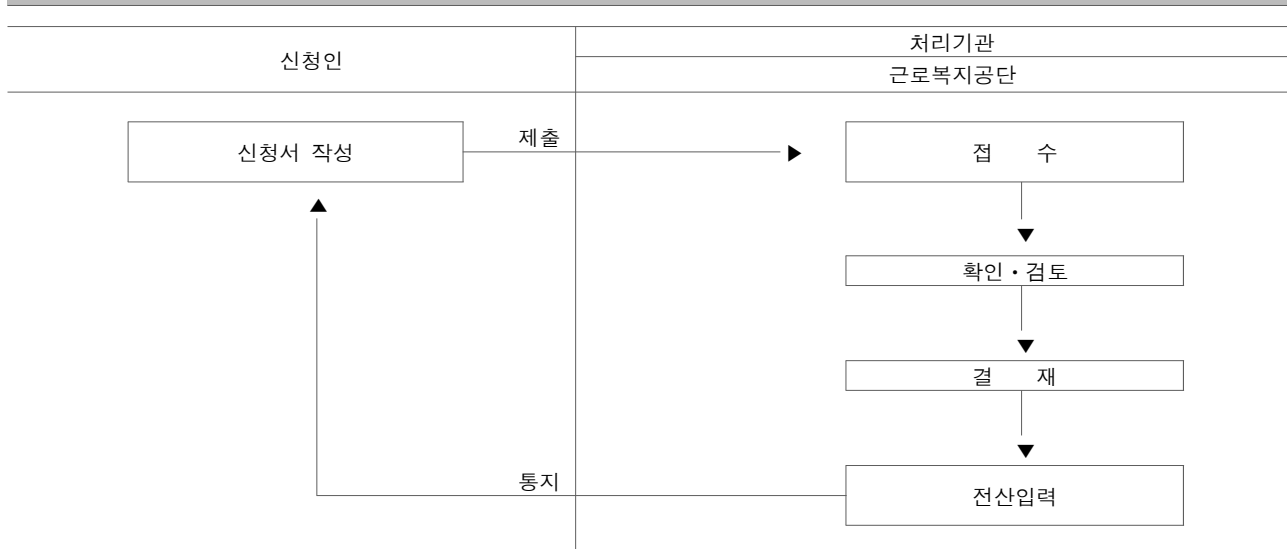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 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5. 단기예술인은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6. 월평균보수는 “월평균보수”(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를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5제1항).

처리절차



[] 15세 미만 [] 가 입
[] 외국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가입탈퇴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 아래의 생년월일, 체류자격, 국적은 외국인인 경우에만 작성)			
	영문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체류자격	국 적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노무제공개시일	직종 부호	월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 여부 [] 예 [] 아니오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제2호, 제104조의11제5항·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항·제5항, 제125조의8제3항·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2. 주민등록표 초본(15세 미만 노무제공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탈퇴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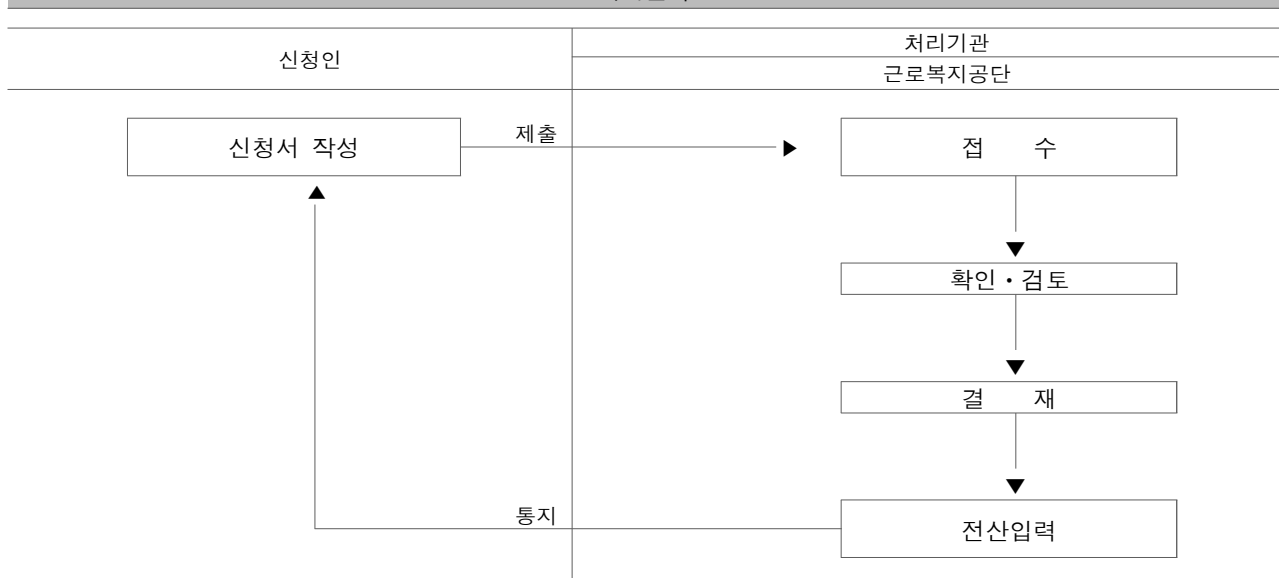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는 15세 미만 및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이 신청서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등은 이들이 보험가입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및 외국인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업주 신청 불가)

작성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은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합니다.
신청인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노무제공개시일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용역(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4.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단기노무제공자는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6. 월보수액은 “월보수액”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963),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6제2항). 7. 노무제공자(제6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직종 부호

노무제공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57 퀵서비스기사
	944 택배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9 골프장캐디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택배 지·간선기사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63 화물차주(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점포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배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주점 식자재·식품 운송·배송)
	952 건설기계조종사	966 유통배송기사(기관 구내식당 식자재·식품 운송·배송)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3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평균보수” (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를 적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보수액”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6제2항).		
	5. 노무제공자(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은 직종이 “방문판매원” 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하단 직종별 추가입력번호 등 표에 있는 번호 중에서 골라 적습니다. 3. 배송수단은 직종이 택배기사(직종부호: 944), 쿼서비스기사(직종부호: 957) 또는 화물차주(직종부호: 952~956, 961~966)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되는 배송수단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4. 건설기계종류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선택)에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5. 유통배송기사 등의 월 소득란은 직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같은 조 제13호마목·바목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62, 963), 유통배송기사(직종부호: 964, 965, 966)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월합계액을 적습니다.		
	※ 선택	방문판매원	입직 유형
		택배기사 및 쿼서비스기사	배송 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기계 종류
			① 월 기준 소득 ·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자전거·지하철 ⑤기타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① 불도저 ② 굴삭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캐리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안정기 ⑪ 콘크리트빔플랜트 ⑫ 콘크리트피니셔 ⑬ 콘크리트살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믹싱플랜트 ⑯ 아스팔트피니셔 ⑰ 아스팔트살포기 ⑱ 골재살포기 ⑲ 쇠석기 ⑳ 공기압축기 ㉑ 천공기 ㉒ 향타 및 향발기 ㉓ 자갈채취기 ㉔ 준설선 ㉕ 특수건설기계 ㉖ 타워크레인 ㉗ 콘크리트믹서트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후>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증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일련 번호	피 보 험 자		자격취득· 상실여부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상실사유
	성 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정보현황조회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210mm×279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 (하도급)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신고 (하도급) 사업장	업종명	(주생산물:)
	업종코드	총매출액(사업금액) 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원도급사업장 납품물품명 물품명: 매출액: 만원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사무실: 휴대 폰:
원도급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명(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명 (주생산물:)	업종코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고용센터	➔	확인검토 고용센터	➔	결재 청장·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	---	------------	---	--------------	---	--------------	---	--------------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②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고용유지조치 현황	③ (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	명	④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 수	명
	⑤ 총근로시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 반복적 연장근로시간)	시간	⑥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⑦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⑧ 근로시간 단축률	%
신청내용	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한 금품 총액	원	⑩ 지원율	2/3, 1/2
	⑪ 지원금 신청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한 금품 총액×지원율)		(원)	
	⑫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연번	성명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한 금품	지원금 신청액	비고
	주민등록번호				
<예사>	홍길동 800200_1000000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2					
3					
계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사업주가 4대 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②란은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③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④란은 ③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를 한 근로자 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⑤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총근로시간[해당 월의 전체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합계+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연장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⑥란은 (월) 동안 "③란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근무한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⑦란은 ⑤에서 ⑥를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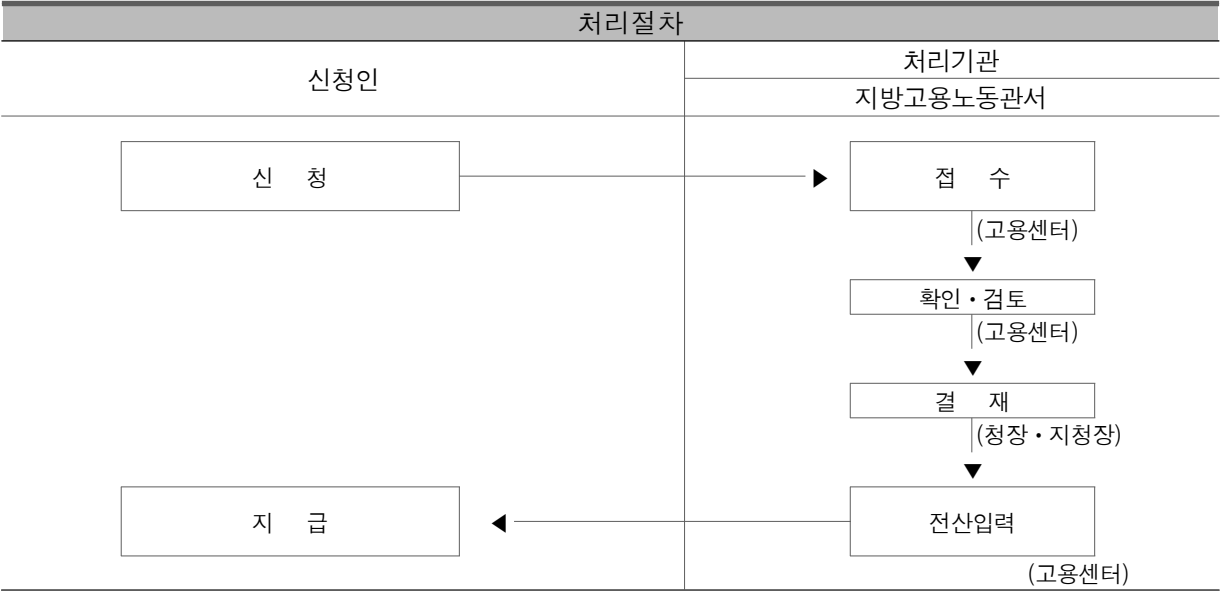
⑧란은 ⑦/⑤×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⑨란은 ⑦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⑩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⑪란은 ⑨에 ⑩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란은 사업주 명의(법인인 법인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②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신청 내용	③ (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	명		
	④ (월) 휴직 근로자수	명	⑤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	원
	⑥ 지원율	2/3, 1/2	⑦ 지원금 신청액	원
	⑧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 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대상 근로자의 (월)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원
				원
				원
				원
				원
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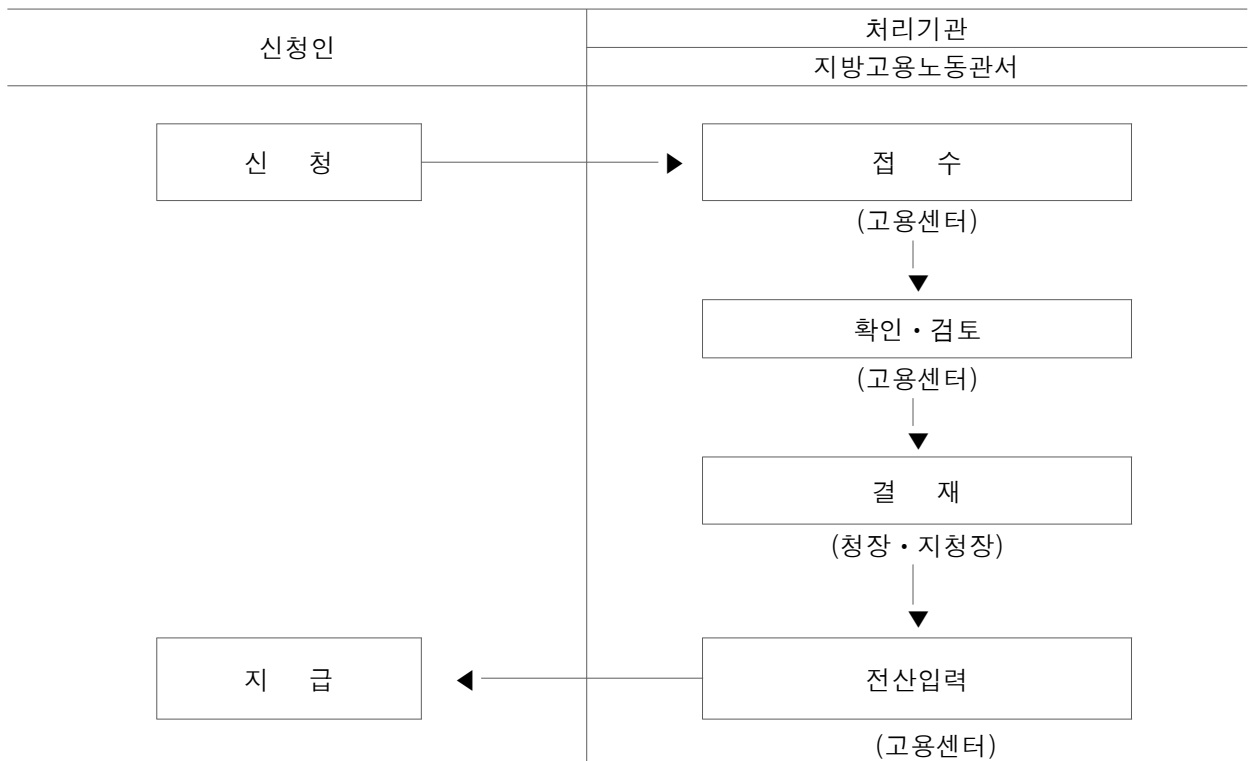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사업주가 4대 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 ②란은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③란은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④란은 ③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⑤란은 ④의 고용유지조치(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을 적습니다.
- ⑥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그 밖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 ⑦란은 ⑤에 ⑥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⑧란은 사업주 명의(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년 제 차(월분) ☐ 근로시간 조정 ☐ 계획
고용유지조치 ☐ 교대제 개편 ☐ 계획변경 신고서
☐ 휴업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②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파견·수급 사업장인 경우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피보험자 수 명

구 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달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③ 소정근로시간		* 작성생략		
④ 연장근로시간 (반복적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⑤ 총근로시간(③+④)		* 작성생략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⑥ 총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 일 · · · (일)	⑦ (월) 전체 피보험자 수	명
	⑧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명	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⑩ (월) 단축한 근로시간	시간	⑪ 근로시간 단축률	%
	⑫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일자																		(일) (기존 근로시간) (단축시간)
		⑬기 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⑬기 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⑬기 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기존 근로시간) (단축시간)	
		⑬기 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⑬기 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⑬기 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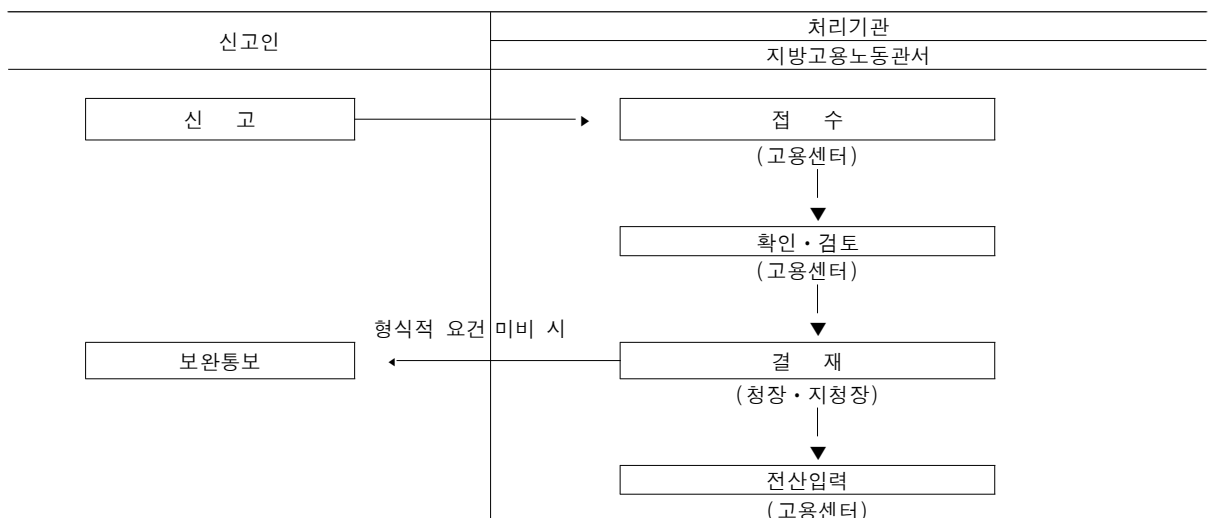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사업주가 4대 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 ②란은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③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⑦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 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④란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연장근로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또는 특정 요일, 특정 주(週)에 일정 시간동안의 연장근로가 반복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⑤란은 ③과 ④를 합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⑥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 '20. 3. 1. ~ '20. 3. 31, 22일)
- ⑦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⑧란은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⑨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1개월) 동안 피보험자별 근무할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⑩란은 ⑤에서 ⑨를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⑪란은 ⑩/⑤×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⑫란은 ⑩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 ⑬란에는 각 일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반복적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년 제 차(월분) ☐ 계 획
고용유지조치(휴직) ☐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일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②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파견·수급 사업장인 경우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피보험자 수 명
고용유지 조치(휴직) 내용	③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 지급기준		
	④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⑤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명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지 작성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회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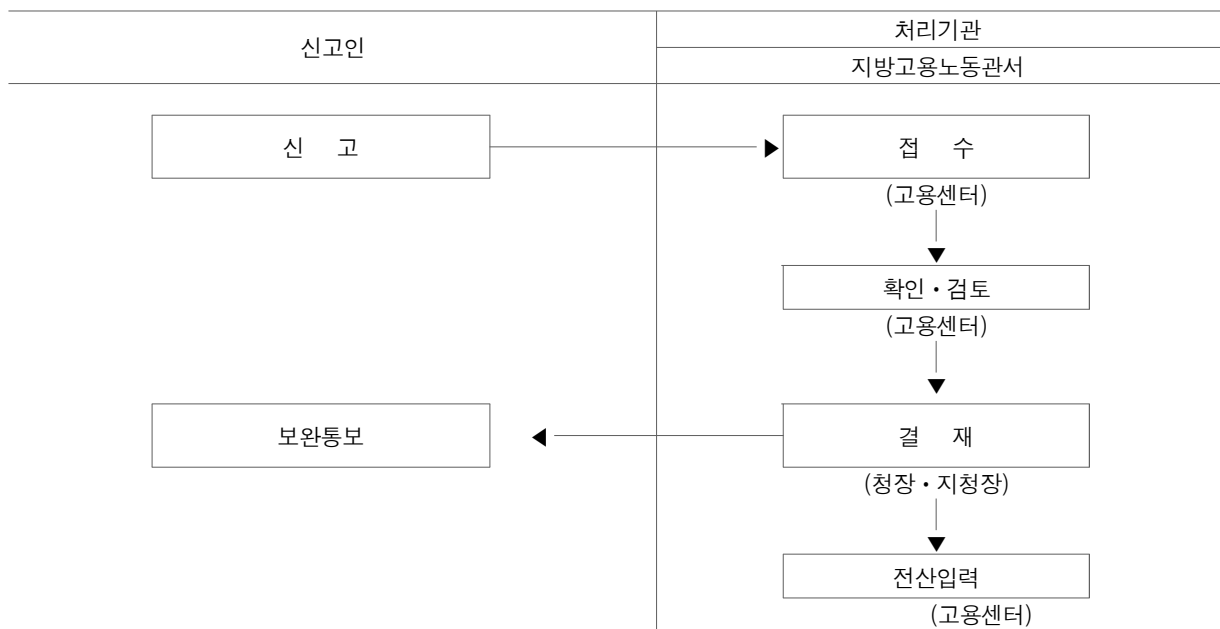
- ①란은 사업주가 4대 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 ②란은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③란은 계획하고 있는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 ④란은 계획하고 있는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을 작성합니다.(예: `20. 3. 1. ~ `20. 3. 31)
- ⑤란은 계획하고 있는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처리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는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채용일 기준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⑨지원율에는 대규모기업인 경우 1/3,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를 적용합니다.
3. 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4. ⑩지원금 신청액은 지급대상자별 지급 임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피보험자 1명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해당 여부란	고용일	지정지역명 (지정지역 전입일)	지원금 산정기간	월 지급 임금액
				()		
				()		
				()		
				()		
				()		
지 급 임 금 총 액						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1쪽 및 2쪽을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5일)

신청인 (이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자우편(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 이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소재지	
	⑥자격취득일(입사일) 년 월 일	⑦이직일(마지막 일한 날) 년 월 일
	⑧구체적 이직 사유	

구직급여 신청 대상 피보험자격 [] 상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한 사람만 작성 [] 일용근로자 [] 단기에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

⑨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업자·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	[] 취직 (취직내용:) [] 사업 (사업내용:) [] 아니오
⑩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예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⑪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예 [] 아니오
⑫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까?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⑭(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⑮(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 . ~ . . .)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입니까?	[] 예 (3분의 1 미만) [] 아니오 (3분의 1 이상)
⑯(단기에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 동안(.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예 (10일 미만) [] 아니오 (10일 이상)
⑰(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단기에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노무제공)내역이 없습니까?	[] 예 [] 아니오
⑱(노무제공자로 이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코드가 45로 신고된 경우) 귀하의 노무제공 종료 사유는 무엇입니까? *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종료에 따른 이직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구체적 사유:) []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이직 (구체적 사유:)
⑲「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의료·주거·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예 [] 아니오
⑳ 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중 희망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 일자리 정보제공 [] 취업알선 [] 진로지도(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 직업적성검사, 심층상담과 지도 [] 적합한 직업훈련과정 안내 [] 희망하지 않음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쪽에 추가 작성란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04조의8제8항·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수급자격 신청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우편 ☐ 전자우편 (이메일:)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수급자격 신청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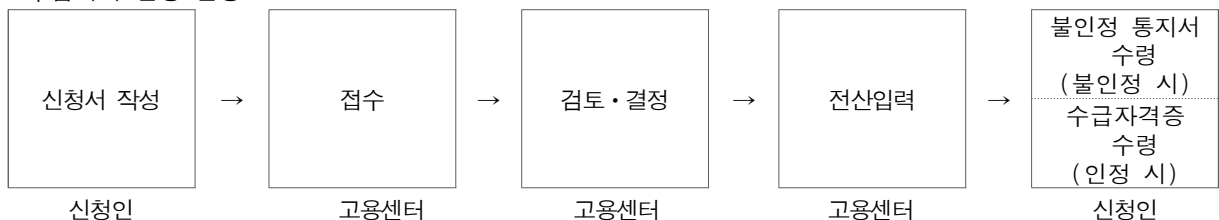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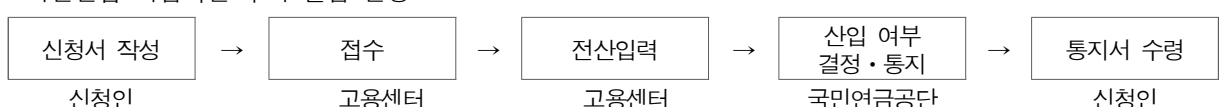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첨부 서류	1. 수급자격증 1부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희망 여부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④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보관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금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실업인정 신청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1, 2쪽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	-----	-----------

청구인 (수급자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방문 사업장	명 칭	소재지(전화번호)	구인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사업장확인 (서명 또는 인)

교통편 이용 명세(광역구직활동 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임 영수증 2. 숙박료 관련 증빙 자료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지 급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주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주 전 주소				
	이주 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취직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취업일 (수강개시일)			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이주한 일자			이주한 거리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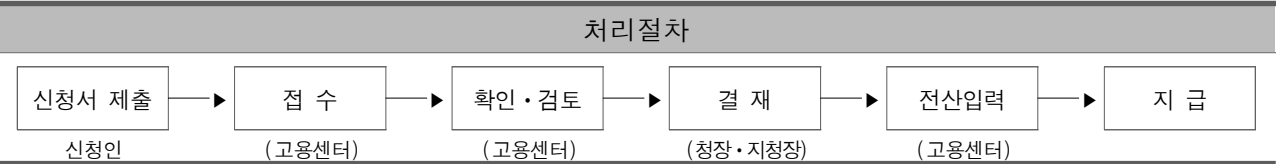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이사비용 견적서(차량톤수 포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이주비 지급	산출명세							
	결정사항	지급액							
	미지급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출산전후급여등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 지급 결정 통지서
[] 부지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가부여기간 (급여지급기간)		신청일
결정내용	[] 지급(금액:)	
	- 급여산출명세:	
	[] 부지급(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제122조의2제3항, 제125조의6제1항 및 제125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지급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은 귀하가 신청시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안내

-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지급 신청서(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④ 출산일(출산예정일)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 다태아(多胎兒) 여부 []에 []아니오
⑦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기간)	⑧ 근로계약기간 내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⑨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2. 신청내용

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⑪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3. 확인사항

⑫ 위 ⑩의 신청기간 중 취업(재입사 포함),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 등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습니까?
[]에 []아니오 (“예” 로 대답 시 하단에 기재)

• []취업(재입사) 취업일(재입사일):

• []근로소득 또는 [] 사업소득
(소득활동기간: 금액: 원)
(근로소득의 경우 주 근로시간: 주 시간)

⑬ 신청기간 연장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잔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상당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하며,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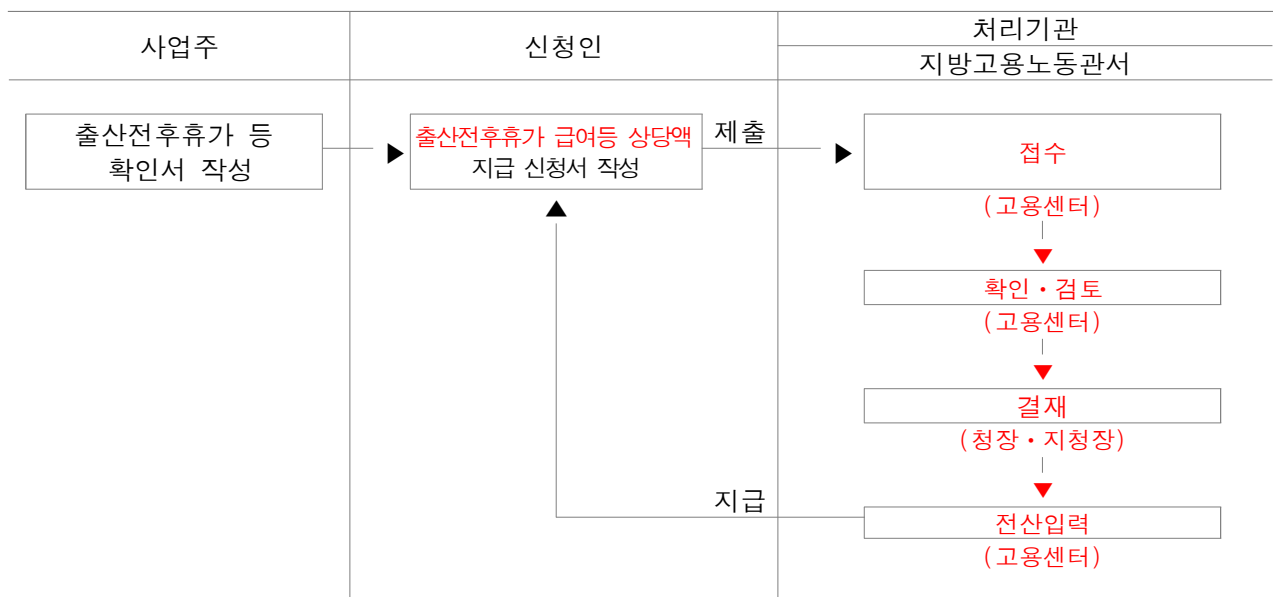
작성 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은 근로계약 만료일에 해당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4조 확인)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에'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상당 기간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의 총 기간(시작일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총 일수를 기재합니다.
6. ⑨란에는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및 총일수를 적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의 휴가기간 중 기사용한 ⑧의 출산전후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임신주수에 따라 부여된 5일~90일의 휴가기간 중 기사용한 ⑧의 유산·사산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
7. ⑩란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상당 기간에 대해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 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8. ⑪란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9. ⑫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지급 신청기간' 중 취업(재임사 포함),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 등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10. ⑬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⑭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출산전후급여등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 정 수 급	⑦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 추가 징수금액			
	⑨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⑩ 납부할 금액(⑦+⑧+⑨)				
⑪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귀하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 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77조·제77조의5·제77조의10,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03조·제104조의9제5항·제104조의16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25조의6제3항·제125조의12제3항에 따라 [] 지급 제한, [] 반환명령, [] 추가징수를 결정하고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출산전후급여등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사업주	④ 회사명			
	⑤ 소재지			
⑥ 과오급 결정사유				
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위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 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제77조·제77조의5제3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제77조의10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제125조의6제3항·제125조의12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3(외국인예술인의 가입신청) ①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4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u>

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신청 사실을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

<신 설>

실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4(외국인노무제공자의 가입신청) ①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4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의6제4항에 따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외국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영 제104조의12

제3항 또는 영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노무제공자가 직접 가입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신청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소속 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2조, 제2조의2,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82조의2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무제공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

---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조의3제1항·제2항·제5항, 제2조의4제1항·제2항·제5항-----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말한다)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

-----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예술인·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 ----- 별지 제75호의4서식-----

<삭 제>

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

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35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0조의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의 특례) 제80조에도 불

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

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 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
회 연속 분할 납부하여야 하
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을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경우.
다만,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같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월
별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
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경우. 다만, 100분의 3

<u><신 설></u> <u>제82조의2 (생 략)</u>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①・② (생 략)	<u>0 이상을 납부한 이후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거 나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 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같 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월별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82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을 통 한 실업신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를 말한다.</u> <u>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 의 신고 당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의제1호 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u> <u>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 렵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82조의3 (현행 제82조의2와 같 음)</u>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이사화물의 운송명세 등 이주 사실 및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상당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지급신청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
----- .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2. 3. (생략)

<신설>

②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으로 본다.

제12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 3. (현행과 같음)

4. 유산이나 사산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 출산전후휴
가 급여등 상당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

-----.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당액”-----.

제12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과오급 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
--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지급제한, --
추가징수-----

-----.

② -----

---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당액의 금액-----

-----.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평균소득(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

-----.

② (현행과 같음)

③ 15세 미만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주자·원수급인 또는 해당 15세 미만 예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단기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 설>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노
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출산전
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추가징
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
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
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
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
으로 본다.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
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
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의 범위) ①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
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1
호에 따른 월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
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

---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
----- 지급제한, 반환명령-

-----.

-----.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4항 ----

-----.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
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
무제공자”라 한다)가 -----

-----.

출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해당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단기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영 제104조의12제3항 또는 영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신 설>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의4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u>반환명령</u>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영 제104조의17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 <u>지급제한, 반환명령</u>----- ----- --. ----- ----- ----- -----.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4항 --- ----- ----- ----- ----- ----- -----.
--	---